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등 산출기준(제14조의3 관련)

구분	금액
신청수수료	건당 1만원
1차 심사비용	건당 100만원
2차 심사비용	건당 100만원

비고

1. 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 납부합니다.
2. 심사비용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납부합니다.
3. 위 표의 비용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현장실사위원의 수당, 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에 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단가를 준용합니다.
5.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에 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합니다.